

부 령

● 행정안전부령 제348호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3년 3월 15일

행정안전부장관 인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8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	1개월 이상 3개월 미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별표 2 제9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	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행정안전부령 제7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 2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한사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한편,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와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마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<행정안전부 제공>